

## 2025년도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2025년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5년 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포상 목적

- 국내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포상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 관계자의 사기를 고취하고자 함

### 2. 포상의 규모 : 총 5점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개인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	5점

### 3. 포상 신청(추천) 대상 및 자격 요건

구분	신청(추천) 대상	자격 요건
개인 표창	산업계 · 가상·증강현실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 기술·제품 개발, 품질 개선 및 활용·확산, 양질의 일자리·신시장·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추천마감일(9.19) 기준 <b>가상·증강현실 분야 3년 이상 근무</b>
	학·연구계 · 가상·증강현실 관련 학·연구계 종사자 (초·중·고·대학 교직원, 연구원 등 포함) · 기술개발 및 품질 개선 지원, 인력양성을 통해 국내 가상·증강현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공공기관, 협·단체 · 가상·증강현실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 조합 및 기타 단체 등 종사자 · 산업개선, 정책개발·지원, 저변확대, 산업·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가상·증강현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개인 표창	공무원 · 가상·증강현실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 · 산업개선, 정책개발·지원, 저변확대, 산업·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가상·증강현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추천마감일(9.19) 기준 <b>실 근무기간 3년 이상</b> (병역, 휴직 제외)

#### 4. 추진절차 및 일정

- (1차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공적 사실여부, 미비사항 및 결격사항 등 확인
- (2차 심사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추천심의회를 개최하여 서면심사 등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후보자 추천
  - 심의회 구성 : 가상·증강현실 산·학·연 전문가로 5인 내외 구성 (신청 개인·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선정 후에도 이해관계 성립이 확인될 경우, 해당위원은 제척함)
  - 심사 기준 : 가상·증강현실 산업발전 기여도 등 공통 지표와 산업계, 학·연구계, 공무원·공공기관/협단체와 같은 소속별 특성에 맞춘 부문별 지표 기준으로 심사
- (최종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를 거쳐 최종 포상대상자 확정

#### <2025년도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추진일정>

신청 접수	▶	신청 서류검토	▶	포상 추천심의회	▶	공적 심사위원회	▶	포상대상자 확정	▶	포상 수여식
8~9월		9월		10월 초		10월 말		11월		12월

\* 진행상황,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신청(추천) 방법

##### □ 신청 접수

- 제출기한 : 2025. 9. 19.(금) 18:00까지
- 제출서류

구 분	산 업 발 전 유 공 자
공 통	1. 포상신청서
	2. 공적조서 및 증빙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추가서류 (공무원)	1. 인사기록요약서
	2. 추천서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 작성 원본 한글파일(.hwp)과 서명·날인 후 스캔파일(.pdf) 모두 송부
- 접수 및 문의처 : 3D융합산업협회 이진수 팀장
  - (전화) 02-6388-6081 / (이메일) js77@gokea.org

## 6. 기타 사항

- 최종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시상 일정 등 별도 통보
- 포상자 신청방법, 추천제한, 제출서류 등은 계획안(붙임) 참조

**붙임 : 2025년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

# 2025년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

2025. 8.



산업통상자원부

# 목 차

<b>I. 포상 개요 및 계획</b> .....	1
1. 포상 목적 .....	1
2. 포상 규모 .....	1
3. 대상 및 자격 .....	1
4. 추천 제한사항 .....	2
1) 민간, 비공무원 .....	2
2) 공무원 .....	4
5. 추진절차 및 일정 .....	6
6. 장관표창 취소 .....	6
<b>II.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b> .....	7
1. 제출서류 .....	7
2. 신청 방법 .....	7
3. 유의사항 .....	7
<b>[별첨 서식]</b>	
1. 포상신청서 .....	8
2. 공적조서 .....	9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12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3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	14

# I 포상 개요 및 계획

## 1. 포상 목적

- 가상·증강현실 산업을 위한 정책·기술개발·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표창함으로써 노고 격려
-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중요성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관심도를 제고함으로써 산업 활성화 도모 및 산업계 사기 진작

## 2. 포상 규모 : 5점 (장관표창)

구 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개 인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	5점

## 3. 대상 및 자격

- 가상·증강현실 관련 기술·제품 개발, 인력양성, 정책지원, 활용 확산 등을 통해 국내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표창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인 자

구 분	신청(추천) 대상	자격요건
개인	산업계	추천마감일(9.19) 기준 <u>가상·증강현실 분야</u> <u>3년 이상 근무</u>
	학·연구계	

· 가상·증강현실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 기술·제품 개발, 품질 개선 및 활용·확산, 양질의 일자리·신시장·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가상·증강현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가상·증강현실 관련 학·연구계 종사자 (초·중·고·대학 교직원, 연구원 등 포함)  
· 기술개발 및 품질 개선 지원, 인력양성을 통해 국내 가상·증강현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구 분		신청(추천) 대상	자격요건
개인	공공기관, 협·단체	· 가상·증강현실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 조합 및 기타 단체 등 종사자 · 산업 개선, 정책개발·지원, 저변확대, 산업·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가상·증강현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추천마감일(9.23) 기준 <u>가상·증강현실 분야 3년 이상 근무</u>
	공무원	· 가상·증강현실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 · 산업 개선, 정책개발·지원, 저변확대, 산업·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가상·증강현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추천마감일(9.23) 기준 <u>실 근무기간 3년 이상</u> (병역, 휴직 제외)

## 4. 추천 제한사항

### 1) 민간(비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 당해 사업장의 등기 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 내 검색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범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채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채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른 채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채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채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채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채불사업주

※ 추천일 이전 채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채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부 홈페이지\(www.mofel.go.kr\)](http://www.mofel.go.kr) → 정보공개 → 채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2) 공무원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휴직 중인 자
- 수사 중인 자
- 재직 중 형사처벌 받은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 퇴직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p>※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li> </ul> </li> </ul> <p>※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li> <li>-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li> </ul> </li> </ul>
---

## 5. 추진 절차 및 일정

구 분		세부 내용
공 모 (8~9월)	신청 및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접수 (작성·제출 방법 7page 참조)</li> <li>• 제출기한 : 2025. 9. 19.(금) 18:00까지</li> </ul>
평 가 및 선 정 (9~11월)	1차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 서류 검토하여 미비 내용 보완 및 공적내용 사실여부, 결격사항 등 확인</li> </ul>
	2차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포상추천심의회를 개최하여 서면심사 등을 통한 후보자 추천</li> </ul>
	최종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 심의를 거쳐 포상 대상자 선정</li> </ul>
시 상 (12월)	시상식 개최 및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일정은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예정</li> </ul>

## 6. 장관표창 취소

-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 기재한 경우

## II

##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 1. 제출서류

- 포상신청서 1부 <별첨서식 1>
- 공적조서 1부 <별첨서식 2>
- 장관포창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첨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첨서식 4>
-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 포상 분야 근무기간 증빙서류 필수(재직·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등)
  - ※ 과거 정부포상 기록이 있는 경우 정부포상 사본 등 필수

[공무원 추가 제출서류]

-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 <별첨서식 4>
  -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대조·확인하여 작성하고, 인사담당관 확인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원 소속기관의 포상추천 동의 공문 1부 (타부처 소속의 경우)
  - ※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내용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2. 신청 방법

- 제출기한 : 2025. 9. 19.(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E-mail 제출 (js77@gokea.org)
  - ※ 작성 원본 한글파일(.hwp)과 서명·날인 후 스캔파일(.pdf) 모두 송부
  - ※ 필요시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단, E-mail 제출 필수)
- 담당자 : 3D융합산업협회 이진수 팀장(02-6388-6081)

### 3. 유의사항

- 기타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에 의함
- 동 기간에 다른 추천기관에서 추진하는 포상대상자일 경우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향후 최종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별첨 서식 2 >

## 공 적 조 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군번 (군인의 경우)	
		해당 없음	
국 적	대한민국		
주 소	주민등록지 상 주소 기재		
직 업	소 속		
회사원, 연구원, 국가공무원 등	회사 및 부서명 (사업자등록증상 (주) 앞뒤 위치 확인)		
직 위	등 급(직급·계급)	근 무 기 간	
차장, 상무·대표이사 등	ex) 행정사무관, 3급 등	0년 0월 *포상신청일 기준(2025. 9. 19.) 공무원 : 실 근무기간 작성 비공무원 : 가상 증강현실 분야 근무기간 작성	
<b>공적요지 (50자 내외)</b> * 뒷장의 공적사항을 요약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 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막연한 내용, 수식어 및 미사여구 지양 / 쉽고 간명한 문장 ※ 공무원 : 조사자 - 담당 부서장 / 추천관 - 담당 정책관(국장급),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 ※ 민간(비공무원)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부서장 / 추천관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 등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추 천 관</span> <span>홍길동 대표이사 (인)</span>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2025년      월      일             </div>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0000.00.00	0000.00.00		
<b>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b>			
<작성요령 삭제> ※ 장관 이상 정부포상만 기재(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 기간 무관 ※ 기타 관련 포상 이력은 공적사항(아래)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0000.00.00	ex)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XXX 유공)		
<b>주 요 학 력 및 경 력</b>			
<작성요령 삭제> ※ 공적분야(가상·증강현실) 관련 이력 기재 ※ 앞장의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기타 이력사항은 공적사항(아래)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0000.00.00~0000.00.00			
<b>공 적 사 항</b>			
<작성요령> 삭제 후 글자색 검정으로 작성 - 글자모양 : 휴먼명조, 12Point / 행간 : 160% - 개조식 작성 (글 앞에 번호·기호를 붙여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 - ‘공적 사항’이 많은 경우 페이지 추가하여 기술할 수 있음 -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대표이사 등을 제외한 임직원은 소속기관의 전체성과가 아닌 직접 관여한 업무 및 실제 기여한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기재(구체적 성과, 실적 수치화) ex) 대표이사(기업 전체 성과), 대표이사 제외 임원(해당 부서 성과), 직원(담당 업무 실적) - 공적내용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첨(증빙자료가 없는 내용은 불인정될 수 있음)			
수공기간	재직기관별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과거 포상기록	기 수상 상패나 상장 스캔본 또는 상훈 홈페이지 캡처본		
공적사항	신제품·신기술 개발 관련 언론보도(학술지), 특허증, 인증서 사본 등		
매출액/영업이익	공시데이터, 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 2개년)		
수출액	수출실적증명서 (무역협회,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금융권 확인증명서 등)		
종업원수	공시데이터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민감정보 삭제)		

## 공 적 사 항

<작성 내용 예시> 삭제 후 글자색 검정으로 작성

### 가. 대표자의 경우, 작성 내용 예시

- 회사설립현황
- 회사규모 확대(매출, 종업원)
- 기술개발, 시장개척, 품질향상, 활용·확산 등의 노력 및 성과
-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 신사업 발굴 등의 노력 및 성과
- 기타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대외 수상실적, 특허, 인증 등
- 직원복지
- 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

### 나. 담당 임원 및 직원의 경우, 작성 내용 예시

- 근무연수, 근무경력
- (산업계) 회사 내 기술개발,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및 수출증대 등을 위한 기여도
- (학·연구계) 신기술 개발 실적, 품질개선 지원, 인력양성 노력 등
- (공공기관 등) 산업 개선, 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저변확대, 정책개발 실적 등
- 기타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성과
- 대내외 수상실적, 특허, 인증 등 개인 공적

※ 공적조서 작성원본 한글파일(.hwp) 및 서명/날인한 스캔본(.pdf) 모두 제출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장관표창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가상·증상현실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서명)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한자),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등급(직급, 계급), 근무기간,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 과거포상
  - 민감정보 항목 : 징계, 형벌 (해당 시에 수집·이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 기록부는 영구, 표창 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5. .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	-------------------------------------	----	------

위와 같이 2025. . . 민감정보(해당 시)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	-------------------------------------	----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3. (수집근거)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대통령령 제31380호)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 기록부는 영구, 표창 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2025.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	-------------------------------------	----	------



## 인사기록요약서 작성요령

- (1)~(18)란은 인사담당자가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 (1) 란의 “소속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한다.  
(예시 : ○○광역시 ○○구청, ○○초등학교, 육군○○부대)
- (2) 란은 포상대상자의 현재 보직명칭 및 직위를 기재한다.  
(예시 : ○○국장, ○○과장, ○○출장소장, ○○초등학교장, 해군 제○○함대장)
- (3) 란의 경우 공무원은 직급명칭을 군인은 계급을 기재한다.  
(예시 : 교사, 공군원사, 행정주사, 기술서기관)
- (4) 란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되 한자는 반드시 정자(正字)로 기재한다.
- (5) 란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대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 (6) 란은 현역 군인만 기재한다.
- (7) 란은 해당란에 “■”로 표시한다. (기타는 사망자, 임기만료 등 해당)
- (8)~(11)란은 근무경력 별로 해당란에 각각 기재한다.
- (12) 란은 재직경력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시 제외되는 기간을 기재한다.
- (13) 란은 재직자나 퇴직예정 공무원의 실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 (15) 란은 징계나 형벌사항을 기재하되 일반사면이 되었거나, 징계기록(불문 경고포함)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한다.
- (16) 란은 과거에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수여일자와 같이 기재하되, 특히 최근 3년 이내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실적은 모두 기재한다.
- (17)~(18) 란은 인사담당자 및 인사담당관이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19) 란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